

북한 핵테러 위협 대비방안 연구; '선제적 자위권' 보장을 중심으로

김연준*

요 약

북한은 최근 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 도발을 감행하였다. 북한에서 진행 중인 핵과 미사일 실험은 핵전력의 기술적 수준에 있어서 표준화, 경량화, 다종화의 완성단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북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조만간 핵도발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상된다.

핵폭탄은 그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제1격을 허용한 다음에 반격을 하겠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없는 절대무기이다. 따라서 핵을 보유하게 된 북한을 상대로 하는 우리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제적 자위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대응개념일 수밖에 없다. 조만간 북한의 핵도발이 예상되는 현실점에서 선제타격 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발의 원점지역을 타격할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비하여 '핵무장 선택권'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A study on measure of North Korea's nuclear terror threat; Focusing on the guarantee of 'anticipatory self-defense'

Kim Yeon Jun*

ABSTRACT

North Korea had recently conducted the fourth nuclear test and ICBM tests, dared nuclear provocation targeting the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determined based on experiments of nuclear and missile in progress in North Korea that the technical level of nuclear force reached the completion stage of standardization, lightweight, and variation. It is expected to become reality that North Korea executes the nuclear provocation targeting the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near future.

Nuclear bomb is an absolute weapon that the logic of counterattack after allowing the first strike of the other party cannot be applied due to its tremendous destructive power. Therefore, as the opponent to North Korea that it decided to hold the nuclear, the exercise of anticipatory self-defense in order to guarantee a minimum of right to life is not a choice, but the only essential correspondence concept. At the moment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provocation is expected in the near future, it shall be provided with competence to strike the origin region of provocation by forming a national consensus of preemptive strike enforcement. Also, in preparation for the fif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 which is anticipated, the national competence must be mobilize to be able to ensure the 'Nuclear Op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ey words : Anticipatory Self-defense, Preemptive Strike, Nuclear Option

1. 서론

핵폭탄은 엄청난 폭발력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반격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즉 핵을 보유한 국가는 제1격으로 상대 국가를 초토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조만간 핵으로 무장할 북한을 상대하는 우리는 북한의 핵테러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핵테러 도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자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선제 타격의 의지와 능력을 완비해야하는 절박한 시점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먼저 북한의 핵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관습법과 유엔헌장에 명시된 선제적 자위권의 개념과 사례분석을 통해 선제타격을 위한 구비요건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어서 북한의 핵테러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방안 순으로 고찰하려 한다.

본고는 북한의 핵테러 위협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통해, 현여건 하에서 선제타격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전문가 그룹의 정책적 관심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2. ‘선제적 자위권’의 법적·군사적 적용 검토

2.1 ‘선제적 자위권’의 법적근거, 개념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이란 ‘국가가 자국을 위하여 급박한 현실의 위협을 배제하고, 일정한 한도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5]. 이러한 ‘자위권’ 행사의 법적 근거는 유엔헌장체제 以前の 국제 관습법과 유엔헌장의 관련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2.1.1 국제 관습법상 ‘선제적 자위권’

유엔헌장체제 以前の 국제 관습법에서 자위권을 인정하게 된 계기는 1837년의 영국과 미국 간에 발생한 캐롤라인號 사건에서 유래하고 있다[1]. 1837년 발생한 캐롤라인號 사건은 당시 영국령이었던 캐나다의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국적의 민간선박인 캐롤라인號

가 캐나다-미국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미국영토에서 캐나다 반군을 지원할 무기를 실어 나르기 위해 정박 중이었다. 이를 영국이 감지하여 niagara江의 미국 측 연안인 schlosser港에 정박하고 있던 이 선박을 공격하여 나이가가라폭포 밑으로 떨어뜨려 다수의 미국 선원을 살해하게 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국제법에 기여한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협’(threat)이 있는 경우라도 선제적인 자위권 행사(방어적인 군사행동)이 정당화되었다는 점이다. 더하여 상대방의 무력공격 위협에 대항하는 자위권의 행사는 일정한 요건이 구비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위협에 대한 자위권행사의 구비요건으로 ‘긴급하고 압도적이며 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고 또한 심사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때에만 자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급박한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자위권 행사는 비합리적이거나(unreasonable), 과도한(excessive)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그 이유로 ‘자위의 필요성’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행위는 바로 그 필요성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하며, 명백히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UN헌장체제 以前の 국제 관습법에서는 국가는 실제의 무력공격에 대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급박한 무력공격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스스로 방위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선제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자위권행사에는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1.2 유엔헌장에서 ‘선제적 자위권’과 해석 논란

현대 국제사회는 국가 간에 갈등해결을 위한 법적근거로 유엔헌장 체제하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고 있다. 즉 유엔헌장 제2조 3항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수단의 해결과 제2조 4항에서 무력의 위협과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무력사용을 무조건 금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엔헌장 제51조에서 무력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두었다. 그것이 바로 자위권 조항이다.

유엔헌장 제51조는 ‘이 헌장의 여하한 규정도 국제

연합 가맹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라는 고유한 권리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어떤 국가도 자위권을 방해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유엔헌장에 명시한 자위권을 '고유의 자위권'(self-defense)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유엔헌장 위 제51조에서 고유의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선제적 자위권 행사의 정당성에 논란이 존재한다. 즉, 기존에 국제 관습법에서는 선제적 자위권을 인정하였으나, 유엔헌장에서는 자위권 행사를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무력공격의 위협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선제적 자위권 행사의 논란에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즉 위 제51조의 자위권은 제2조 4항에서 금지되어 있는 모든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와, 위 제2조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제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은 고유의 자위권과는 구별되는데 무력공격이 실제 발생되기 이전이라도 상대국가의 공격이 임박(imminence)한 상황에서 무력을 사용하여 자국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즉 '선제적 자위권'은 상대국가의 침해행동이 발생되기 이전에 미리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위협이 가시적이고 확실한 가운데 상대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격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먼저 공격을 취하는 행위이다. 이는 고유의 자위권이 치명적인 제1격을 허용한다는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념이다. 고유의 자위권이 유엔헌장에 근거한 것이라면, 선제적 자위권은 국제관습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유엔헌장의 불명확성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국제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다.¹⁾

2.2 '선제적 자위권'의 군사적 적용과 구비요건

적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에는 예방공격, 억제, 선제공격(타격), 그리고 방어 등 상대방의 군

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선제타격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2.1 '선제적 자위권'으로 선제타격 개념

선제적 자위권의 군사적 조치인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은 상대방의 무력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공격과 선제공격 상황의 회색지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선제공격은 적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략적 경고를 접수한 상황에서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고 기선을 제압하며, 향후 사태 전개的主导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9]. 반면에 예방공격은 전쟁의 발발이 당장 급박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일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긴장 속에서 적이 유리한 전략태세하에서 전쟁을 개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보다 앞서 전쟁을 개시하는 공격이다. 또한 선제타격은 상대방의 위협발생 정도 면에서, 장래에 예상되는 상대방의 무력행사를 배제하기 위한 예방전쟁의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즉 선제공격을 포함하여 회색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군사행동을 포괄하고 있다.

한편,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은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과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표 2-1>과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 2-1> 선제타격-선제공격 차이점

구 분	선제타격	선제공격
목 적	특정 표적을 타격	전쟁에서 승리
군사목표	특정한 시설/ 장소	적 부대격멸, 지역점령
투입 수단/ 규모	항공기 • 미사일 등 정밀무기	육 • 해 • 공군의 대규모 군사력
기간/ 양상	단기간/ 교전 발생	장기간/ 발사 • 폭격

※ 출처 : 권혁철, "이론·사례연구를 통한 선제공격의 전략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합동참모대학, 2009, pp. 19.

선제타격이나 선제공격은 공히 선제적 자위권에 근거하여 직면한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군사행동이지만 위 <표 2-1>에서와 같이, 목적, 투입수단과 규

1) 선제적자위권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1837년 캐롤라인호事件에서 유래하여, 1945-1946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판례에서 비롯되었음.

모, 기간과 양상에서 차이가 있다. 선제타격은 적의 현존하는 화력공격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선제공격은 적의 현존하는 전 침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군사목표와 투입수단과 규모에 있어서, 선제타격은 위협이 되는 특정 무기체계로 지정된 무기체계만 참가하지만, 선제공격은 위협이 되는 적을 격멸하는 것으로 여러 군과 병과가 참가한다. 또한 선제타격은 짧은 시간 동안 발사와 폭격을 하지만, 선제공격은 상당기간 지속되며 교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2].

이상과 같이 선제타격은 전쟁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전쟁을 유발하고 평화를 저해하는 각종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다. 선제공격은 사실 정당성에 있어 국제적 여론, 국제 관습법상 상당한 제한이 뒤따르고 확전으로의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한반도의 여건상 북핵 실험시설, 북핵 개발지역이라는 특정표적을 파괴하여 한반도와 주변국가의 평화를 보장하고 국제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제타격이 더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다.

2.2.2 선제타격의 구비요건

선제타격은 국제 관습법과 UN헌장 제51조에 따른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0]. 첫째, 필요성의 원칙이다. 한 국가가 자국에게 가해지려는 절박한 공격에 대하여 스스로 방위하는 데 있어서, 무력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둘째, 비례성의 원칙이다. 절박한 공격의 대상이 된 국가가 행하는 무력사용은 그러한 위협과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 과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급박성의 원칙이다. 선제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국가는 ① ‘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과 ② ‘심사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이를 부언하면 위 ①번은 선제타격을 시행하기 이전에 다양한 평화적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위 ②번은 시간적 근접성에 따라 선제타격의 시행이 절박함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들은 최소한 두 가지 점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먼저 국가는 타국의 영토보존과 정치적 독립을 해할 의도를 가지지 않아

야 할 뿐만 아니라, 타국에게 과멸을 초래할 급박한 위협을 느끼게 하기에 족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급박한 위협에 대처하는 국가의 무력사용인 선제타격은 그 위협에 대하여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개별국가의 상황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개별국가는 자위권 행사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무력공격의 위협에도 자위권 행사를 위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갖춘다면 이를 보장하는 국제 관습법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선제타격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정당성과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보유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선제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선제타격은 ① 자국에 가해지는 위협이 임박하고 그 위협의 정도가 압도적이어서, 선제타격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며(필요성: 임박성, 위협의 크기), ② 선제타격을 시행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보유해야 하고(의지와 능력), ③ 이러한 기반 하에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의 기반 하에 ③-④ 상대방이 주는 위협의 크기에 비례해야 하고(비례성), ③-⑥ 모든 평화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최후의 수단).

2.3 선제타격의 사례분석과 함의

이스라엘은 핵폭탄 제조시설로 의심되는 이라크 바그다드 근교의 오사릭(osarik) 핵원자로 시설을 지난 1981년 6월 공습을 감행하여 이를 파괴하였으며(이하 ‘이라크 원자로 선제타격’), 2007년에는 시리아 동북부 사막지대인 알-키바르에 위치한 핵시설 추정 건물을 공습하여 파괴하였다.(이하 ‘시리아 원자로 선제타격’)

2.3.1 이스라엘의 선제타격 사례

선제타격을 시행하고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성, 의지와 능력과, 정당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이스라엘의 선제타격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제타격을 해야 하는 필요성 측면이다. 이라크는 원자로 시설의 운용과 핵무기 개발목적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이에 이스라엘의 ‘이라크 원자로 선제타격’은

현재는 연구용 수준의 원자로이지만(이 원자로가 현재 혹은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용 물질을 생산할 수 없을 지라도), 이에 대해 선제타격을 당장 하지 않으면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선제타격을 시행하였다[11]. 또한 2007년 '시리아 원자로 선제타격'을 할 때도 이스라엘은 핵시설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F-15전폭기 편대를 투입하여 이를 사전에 무력화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경우 주변국의 전쟁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안보현실을 감안하여 공습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즉 주변국의 핵개발은 현시점에서 문제가 없을지라도 개발을 완성할 경우 국가생존의 위협이 될 것은 자명하므로, 이러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던 것이다.

둘째,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선제타격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군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성공시킬 군사적 능력을 확보해야만 가능하다. 즉 선제타격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국민적 합의에 실패하고 지도자의 강인한 의지가 없거나, 군사능력이 부족하면 이를 시행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원자로 선제타격'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역량은 정부, 국민, 군이 하나가 되어 선제타격을 통합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들은 수많은 예행연습을 반복함으로써 마치 시계가 작동하듯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6]. 즉 선제타격에 대한 국민들의 혼연 일체된 국가안보의 결집된 의지와 군사적 능력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셋째, 선제타격은 정당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정당성은 국제사회에서 선제타격을 올바른 군사행위로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정도를 의미한다. 선제타격의 정당성은 합법적일 때 통상 국제적으로 인정되지만, 그 필요성과 정당성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군사행동이 명백하게 적법하다면 상당한 정당성을 부여되지만, 어떤 행동이 국제질서 유지에 필요한 도덕적인 목적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그 행동이 법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2]. 이스라엘의 '이라크 원자로 선제타격'에 대하여 유엔안보리는 캐롤라인 독트린(필요성, 비례성, 최후의 수단)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선제적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의하였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라크 원자로 선제타격'은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원자로를 폭격할 정도로 핵위협이 긴박했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적지 않아 정당성의 충족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절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임박성). 또한 이라크와 정치·외교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도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었는가도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유엔헌장 위반에 대하여 강제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는 이라크가 실제 핵개발을 완성한다면 이스라엘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최후의 수단). 이스라엘이 1981년 '이라크 원자로 선제타격'을 시행한 이래로 유엔안보리에서 많은 국가가 선제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 입장을 개진하였다. 즉 일부 親이라크 국가에서는 유엔헌장 내에 선제적 공격의 행사를 규정한 곳은 어디에도 없으며, 선제타격은 헌장의 정신과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다고 주장하여 제51조를 여전히 좁게 해석하였다. 이에 반하여 많은 국가는 유엔헌장체제하에서도 선제적 자위권 행사에 폭넓은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1].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라크 원자로 선제타격'과 '시리아 원자로 선제타격'은 임박성과 최후의 수단에서는 충족이 제한되나, 위협의 크기와 비례성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선제타격은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2.3.2 함 의

이스라엘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원자로 무력화를 위해 시행한 선제타격의 사례분석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정세의 변화는 선제적 자위권을 실시할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억제 혹은 방어로 대처할 수 없는 핵 공격과 대규모 테러 등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선제타격을 시행할 수 있는 국가적인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국제사회의 지원만을 호소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국가 생존의 제약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제타격이 국제사회에서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침략 국가로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사례는 핵전쟁 시대에서 정당성에 대한 국

제사회의 인정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군사작전 시기를 상실하면서 까지 정당성을 충족시키려고 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핵도발 위협에 대한 선제적 자위권 행사는 정당성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성이 충족된다면 이를 통해 파괴적인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북한의 핵테러 위협 분석

3.1 북한의 핵보유 의도와 능력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전개된 동북아 안보체제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북한의 안보를 지탱해오던舊공산권(소련, 중국, 북한)의 동맹이 약화되어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었으며, 동북아에서 한국·미국·일본 3국의 군사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 직면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안보전략은 바로 비대칭 전력의 정점에 있는 핵을 선택하는 것이다[3]. 이러한 인식에 따라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핵개발에 매진하여 왔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의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적화통일의 과업을 달성하고자 한다. 남한에 비해 경제력의 현저한 열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이 군비경쟁에서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받는 방법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 북한의 입장에서 핵보유를 통한 억지력의 보유야말로 체제의 생존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북한은 부시행정부의 핵사찰 요구에 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장해체를 당한 채 속수무책으로 붕괴된 이라크를 보면서 ‘핵협상은 무용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 개발과 핵능력의 과시만이 미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처음에는 북한의 핵보유에 반발하겠지만 결국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7].

마지막으로, 체제유지 및 내부 결속력의 강화 목적이다. 북한은 4차례의 핵실험으로 핵능력의 축적으로

북한의 안전보장은 물론 국제적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설사 대미 압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지도부내의 단결 모색과 주민통제 정당화 등 내부 결속력 강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야말로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의 수단이 되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체제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7].

이상과 같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려는 의도는 한반도 당사자인 한국에 있어서는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주변국 및 지역 내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무장은 결국 핵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일본이 핵무장을 촉발하고,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역내 불안은 가중될 것이다.

3.2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제조 능력

북한의 핵시설은 1960년대 소련이 지어준 영변 핵센터가 모태가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1970년대에는 핵연료의 정련·변환·가공 기술을 집중 연구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 5MWe 원자로의 가동 및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하여 핵물질을 확보하는 등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였다.²⁾ 미국 핵 안보 연구소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북한의 플루토늄 및 무기급 우라늄 추정 비축량’ 보고서에서, 2016년까지 북한은 핵탄두를 최대 48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00년 11월 미국 핵과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초청해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한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개하면서 200대의 원심분리기를 설치하여 가동 중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연간 40Kg의 고농축우라늄 생산이 가능하다[12]. 또한 2016년 1월 북한은 제4차 핵실험 후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였다고 선전하였으나, ‘증폭 핵무기’³⁾ 실험에 성공하여 기존의 핵폭발력을 증폭시키고, 이를 통해 수소폭탄 제조의 기반

2) ‘핵연료 주기’는 광석의 우라늄이 정련-변환-농축-가공 단계를 거쳐 원자로에서 사용된 후, 재활용 및 고준위 폐기물로 영구처리 되기까지의 순 과정을 의미함.

3) ‘증폭 핵무기’는 수소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前단계로 평가됨.

기술을 상당한 수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4].

핵탄두를 이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과 결합되었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핵탄두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3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지상, 공중과, 해상에서 발사하는 방식이 있다. 지상에서는 미사일을 통해서, 공중에서는 전폭기를 이용하여, 해상에서는 잠수함에서 발사가 가능하다. 북한은 지금까지 4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탄두의 소형화에 주력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탄두 미사일의 능력은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

구 분	스커드계열	무수단급	ICBM급
사거리(Km)	300~500	1,000~3,000	10,000
탄두중량(Kg)	700~1,000	500~700	개발중

※ 출처 : 국방부, '2014 국방백서', p. 241.

위 <표 3-1>와 같이 스커드계열 미사일은 한반도를 사정권으로 하고 있으며, 무수단급 미사일은 일본, 괌 지역에 대한 투발이 가능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은 1만 Km 이상 발사가 가능하다. 북한의 무수단급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탄두무게 소형화, 대기권 재진입에 관련된 기술적 문제만 일부 보완한다면 실전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⁴⁾

이상과 같이 북한의 핵탄두 제조 능력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40여 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8]. 또한 핵탄두를 투발할 수 있는 위협적인 수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일부 기술적인 문제와 핵탄두 소형화만 완성된다면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북한은 2015년 12월 21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사출 테스트에도 성공했다면서, 그 동영상을 2016년 1월 8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관련 동영상을 공개하였음.

3.2 북한의 핵공격 형태와 예상피해 분석

3.2.1 북한의 핵공격 형태

북한이 핵도발 능력을 완성한 상태에서 그들의 다양한 도발형태는 단순히 군사적 측면이 아니라 한미동맹에 따른 군사적 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진다. 북한의 핵공격 양상을 개전초기, 개전 기간 중과, 핵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양상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조기 석권을 위해, 북한은 개전초기단계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여 우리의 지휘통제시스템이나 주요 군사표적 지역을 직접 타격하거나, 고고도에서 공중폭발을 통해 고주파의 핵전자기 펄스를 발생하여 군사작전 역량 자체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즉 북한은 이러한 대혼란 상황을 이용해 개전초기에 수도권을 확보하고, 상황에 따라 신속히 전쟁종결을 시도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은 개전기간 중에 핵무기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북한은 군사적 상황이 우세한 상황에서는 지원세력의 증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개전초기에 반격을 당하여 불리한 군사적 상황에서 이판사판식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여 현 상황 타개를 모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핵전력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재래식 전력을 사용하여 국지도발을 시도하여 그들의 정치·군사적 목적 달성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핵을 보유한 북한은 평시·개전초기·개전과정 중 등 다양한 시기에 그들의 정치·군사적 목표달성과 협상카드 등의 다용도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력한 정치·외교·군사적인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3.2.2 북한 핵도발시 예상피해 분석

1998년 미 국방부가 비밀리에 15Kt 위력의 핵무기가 서울 용산 상공에서 폭발했을 때의 피해 범위를 모의 실험한 결과 반경 45Km내 서울중심가는 완전히 증발하였고, 경기도 일산~수원일대까지 핵폭풍, 충격파와, 낙진 등의 피해로 사상자는 62만~125만여 명이 발생 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13]. 또한 미국 국방부 산하 국

방위협감소국(DTRA)에서는 10Kt급 핵폭탄 1발이 서울 중심지역에 폭발할 경우 최소 10만여 명이 사망하고 낙진피해로 최소 8만여 명이 사망하는 등 34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20Kt급 핵폭탄 1발이 폭발할 경우 최대 300만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에 의한 핵공격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초도화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북한이 핵을 위협과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는 국가생존의 문제로 직결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재래식 국지도발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응징보복하려는 우리에게 핵으로 위협한다면 속수무책인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을 자명한 사실이다.

3.3 북한 핵도발에 대비한 선제타격의 필요성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지난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하면서,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표준화·소형화·다종화의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다. 미국상원도 지난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이후에는 ‘비핵화’ 아니라 ‘비확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북핵확산 금지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핵확산 방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14]. 즉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 된 현 상황에서 선제타격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한 이유다. 첫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휴전선과 인접해있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선제타격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의 45%이상과 GDP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즉 국가의 산업·행정·군사적 핵심역량이 휴전선에서 불과 50Km지점에 집중되어 있어서 기습공격에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핵전쟁 시대에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비하여 선제타격은 필수적이다.

둘째, 북한의 핵도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선제타격일 수밖에 없다.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은 제1격으로 국가생존자체가 불가능하며, 이에 선제적 자위권 수단으로 선제타격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전통적 전략, 현 군사력 배치 등은 속전속결의 기습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호전적인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분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선제타격이 실질적인

유일한 방법이다.

이상과 같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선제타격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력한 억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4. 북한의 핵도발 위협에 대비방안

4.1 한국형 맞춤형예제전력의 역량과 한계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자체적인 군사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한국형 맞춤형예제전력의 핵심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이다. 먼저 킬체인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로 공격도발 징후를 보일 때 30분 이내에 탐지에서 타격까지 완료하는 일련의 미사일 타격체계로서 선제타격 수단으로 운용하기 위한 체계이다. 또한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 한반도의 전장 환경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지표면에서 40km상공)의 중첩된 방어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8]. 즉 북한의 핵·미사일로발에 대비한 창과 방패 역할을 하기위한 한국형 맞춤형예제전력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형 맞춤형예제전력에 필수적인 북한에 대한 정보획득의 대비의존도는 대략 70~90% 수준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독자적인 억제력 발휘는 제한되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북한의 핵무기 탐지수단은 아리랑 3호 위성과 금강·백두 정찰기뿐이다[15]. 아리랑 3호 위성의 탐지능력은 북한의 이동식탄도미사일의 탐지가 불가능한 수준이다.⁵⁾ 그리고 타격수단면에서 지표면에서 40km상공에서 타격이 가능하여, 단한번의 요격이 실패하면 탄도요격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또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 2020년에 실전배치될 예정에 있어, 한미연합자산의 활용이 없이는 독자적인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5) 아리랑 3호는 승용차의 소형 혹은 대형인지를 구분하는 수준임. 1일 2회 북한상공을 촬영하고 있어 이동식발사대의 실시간 추적이 어려운 실정임.

4.2 선제타격을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예상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선제타격 능력을 조속히 구비해야 함은 물론이며, 선제타격이 실패할 경우 결연히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선제타격으로 인해 국민들이 인명과 재산피해, 전면전으로 확전에 대한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국민의 합의가 중요하다. 이를 통해 선제타격 시행을 주저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제타격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국민의 단호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선제타격에 따른 남남(南南)갈등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만에 하나 선제타격이 실패할 경우 일부 비판세력들은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기 않은 호전적인 행위로 비판하면서,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하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제타격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확고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한다.

4.3 강력한 한·미동맹체제 유지

우리 군(軍)이 구축하려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2020년대 이후에나 실전에 배치할 예정이고, 기술적 완성도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사일방어망 구축은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추구하는 MD체계 참여문제에 접근한다면 우리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미국과 상호운용성이 필요한 탐지-식별-결심과 관련된 조기경보체계와 지휘통제체계 등에 있어서 MD체계와 연동하는 것이 독자적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전까지는 안보와 국익 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선제타격 수단인 킬체인으로 무력화하지 못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의 MD체계와 연계하여 구축된 한국형 맞춤형예전력으로 대응한다면 완벽한 대비태세 완비가 가능하다.

4.4 '핵무장 선택권' 확보를 위한 국가적 노력 강화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와 지금까지의 기술적 발전추세 등을 고려할 때, 4차 핵실험에서 축적된 '핵 증폭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5차 핵실험을 감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의 향후 5차 핵실험은 핵무기의 표준화·소형화·다종화의 완성이며, 미국 본토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될 일대 사건이 될 것이 명백하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을 보유한 나라를 상대로 승리한 경우는 역사상 전무(全無)하다.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은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에게 엄청난 타격을 가하면서 태평양전쟁을 무려 4년간이나 지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의 핵폭탄 2발로 인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전쟁에서 패하였다. 그리고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방어적인 군사력만을 건설한다면 그 효율성과 경제적 부담은 과중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비핵화의 국제레짐을 준수하면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핵무장 선택권'(nuclear option)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치·외교·군사적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 즉 비상시에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핵물질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최근에 베트남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하면서(2014년), 이란은 핵문제를 해결하면서(2015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재처리 조건을 까다롭게 하며 이를 허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핵무장 선택권'(nuclear option)을 확보하여,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가능한 권한을 획득한다면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핵억제력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또한 이를 통하여 이미 핵무장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핵무장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조건적 접근방식에 따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비하여 '핵무장 선택권' 확보를 위한 국가적인 지혜를 모아야 한다.

5. 결 론

북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핵과 미사일 실험은 핵전력이 경량화·다종화의 완성이 기술적으로 완성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조만간 핵도발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늠케 하고 있다. 더하여 북한의 김정은은 ‘국가 방위를 위해 실전 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핵개발이 완성되었고 어떠한 형태의 도발도 불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핵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16]. 핵폭탄은 그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제1격을 허용한 다음에 반격을 하겠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없는 절대무기이다. 즉 핵을 보유한 국가가 핵으로 선제공격을 하는 경우 상대방 국가는 반격의 여지가 불가능하여 쏘 국민과 국토가 초토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핵을 보유하게 된 북한을 상대로 하는 우리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제타격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정치·사회·군사적 수준의 대응수단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선제타격은 이스라엘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개발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선제타격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군사적 시기를 상실하기 않기 위해서 필요성과 정당성의 문제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물론 선제타격을 위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모두 구비할 수 있는 경우가 최선의 조건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의 가치기준은 개별국가의 입장에 따라서 완벽하게 일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도발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우리의 선제적 자위권 행사(선제타격)은 정당성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성이 충족된다면 이를 통해 파국적인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 군(軍)은 북한의 핵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형 맞춤형제전력(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을 구축하여, 선제타격과 방어능력 구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자적인 탐지자산의 제한,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완벽한 기능 발휘를 위해서는 한미연합자산의 통합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핵도발

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타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고히 하여 선제타격이 실패할 경우 전면전도 감수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은 지난 4차 핵실험(2016년 1월)을 통해 기술적으로 수소폭탄을 제조하기 전단계인 ‘중폭핵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들은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토대로 향후 5차 핵실험 통해 수소폭탄 능력을 완성하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비핵화의 국제레짐을 준수하면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핵무장 선택권’(nuclear option)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치·외교·군사적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핵무장 선택권’을 확보하여,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가능한 권한을 획득한다면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핵억제력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우리는 현재 북한의 핵도발 능력 완성이 임박한 시점에서 백척간두의 위기에 봉착해있다. 이에 우리는 북한 핵도발에 대비한 선제타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비하여 국제사회로부터 ‘핵무장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참고문헌

- [1] 최태현, “국제법상 예방적자위권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6집, pp.203-205, 217-218, 281.
- [2] 권혁철등, “선제적자위권 행사에 관한 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2, pp.14, 24.
- [3] 김옥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유인”, 국제학논총, 제8집, pp.295-325.
- [4] 이상민, “제4차 북한 핵실험 평가 및 추가 핵실험 전망”, 주간국방논단, 제1606호, pp.1-3.
- [5] 최원복, “국제법기본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2003, p.1-3.
- [6] 이동용, “이스라엘 전쟁,” 세림출판사, 1972, p.1-3.
- [7] 채규철, “북핵문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0, p.5.43.
- [8] 국방부, ‘국방백서’, 국방부, 2014, p.12,57-58.

- [9] S. V. Evera, 'Causes of War,'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p.40.
- [10] A. C. Arend etc,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Routledge, 1993, p.72.
- [11] R. D. Higgins, 'the Current Legal Regulations of the Use of Force', Martinus Nijhoff, 1986, p.443.
- [12] 경향신문, 2013년 7월 26일자, 6면.
- [13] 동아일보, 2013년 3월 9일자, 11면.
- [14] 동아일보, 2013년 2월 16일자, 10면.
- [15] 조선일보, 2013년 2월 8일자, 5면.
- [16] 연합뉴스, 2016년 3월 4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30489&isYeonhapFlash=Y>> (검색일자 : 2016. 3. 14.)

[저 자 소 개]



김 연 준 (Kim Yeon Jun)

1983년 3월 문학사
1996년 11월 국방관리전공 석사
2012년 8월 경호학 박사
현재,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email : kyj23509@naver.com